

전국 고용센터 연락처

청	고용센터	연락처	청	고용센터	연락처
서울	서울고용센터	02-2004-7371~3	대구	대구고용센터	053-667-6006
	서초고용센터	02-580-4973		대구서부고용센터	053-605-6460
	서울강남고용센터	02-3468-4746		대구달성고용센터	053-605-9518
	서울동부고용센터	02-2142-8433		대구칠곡고용센터	054-970-1906
	서울서부고용센터	02-2077-6004		경주고용센터	054-778-2516, 2526
	서울남부고용센터	02-2639-2415		포항고용센터	054-280-3051, 3056
	서울북부고용센터	02-2171-1700		구미고용센터	054-440-3364
	서울관악고용센터	02-3282-9386		영주고용센터	054-639-1137
충청	인천고용센터	032-460-4814	광주	문경고용센터	054-559-8231
	인천북부고용센터	032-540-5742		안동고용센터	054-851-8062, 6067
	인천서부고용센터	032-540-2051		광주고용센터	062-609-8657
	부천고용센터	032-320-8975		광주광산고용센터	062-960-3201
	김포고용센터	031-999-0942		전주고용센터	063-270-9201
	고양고용센터	031-920-3988		남원고용센터	063-630-3917
	의정부고용센터	031-828-0893		정읍고용센터	063-530-7501
	수원고용센터	031-231-7857		익산고용센터	063-840-6523
	성남고용센터	031-739-3170	대전	김제고용센터	063-540-8404
	안양고용센터	031-463-0761		군산고용센터	063-450-0637
	안산고용센터	031-412-6942		순천고용센터	061-720-9169
	평택고용센터	031-646-1263		여수고용센터	061-650-0140
	춘천고용센터	033-250-1928		광양고용센터	061-798-1901
	강릉고용센터	033-610-1913		목포고용센터	061-280-0542
	속초고용센터	033-630-1909		해남고용센터	061-530-2911
	원주고용센터	033-769-0960		대전고용센터	042-480-6000
	태백고용센터	033-550-8633	부산	공주고용센터	041-851-8507
	삼척고용센터	033-570-1906		논산고용센터	041-731-8603
	영월고용센터	033-371-6255		세종고용센터	044-861-8993
부산	부산고용센터	051-860-1923~1927, 1914, 2072, 2100		청주고용센터	043-230-6719
	부산동부고용센터	051-760-7210		천안고용센터	041-620-7441
	부산북부고용센터	051-330-9951-5		충주고용센터	043-850-4030, 4032
	창원고용센터	055-239-0963		제천고용센터	043-640-9322
	울산고용센터	052-228-1922-6		보령고용센터	041-930-6243
	김해고용센터	055-330-6436		서산고용센터	041-661-5614
	양산고용센터	055-379-2430	제주	제주고용센터	064-710-4462
	진주고용센터	055-760-6751			
통영	통영고용센터	055-650-1814			

www.moel.go.kr



청년추가고용 장려금

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
보다 나은 고용노동부

온라인 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

오프라인 :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신청

문의 : 국번없이 1350



청년추가고용 장려금



청년을 채용하면
정부가 인건비를

「대폭」 지원해드립니다.

꼭 한번 챙겨보세요!!!

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
보다 나은 고용노동부

0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

중소·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
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

02 지원대상



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
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

* 성장유망 업종,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 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

* 사행산업, 유흥업, 베틱업 등 일부업종 제외

* 공공기관, 정부출연·출자기관, 인건비 정부지원
기업 제외

03 지원요건

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시 기업규모에 따라,

- (30인 미만) 1명 이상 고용
- (30~99인) 2명 이상 고용
- (100인 이상) 3명 이상 고용부터

- 만15세 이상 34세 이하*의 청년을 신규 채용

*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(최고연령 만 39세까지)

- 신규 채용후 6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

- 월임금은 1,573,770원(주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) 이상
(월임금 75만원 이상 1,573,770원 미만인 경우 지급임금의 1/3 지원)

- 4대 사회보험 가입, 최저임금 준수

2 근로자수 증가

전년도말 근로자수 보다 청년 추가 채용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

* 사례 : 전년도말 근로자수가 20명인 기업의 경우, 올해 청년 1명을 신규로 채용하여, 21명으로 기업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지원 가능

04 지원수준

① 신규채용 1인당 연900만원 한도로,
3년간 총 2,700만원

*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500만원을 추가하여
연 1,400만원 지원



예시

(신규채용자 12개월 근무 기준)

구분	 1명 고용	 2명 고용	 3명 고용	 4명 고용
30인 미만	900만원	1,800만원	2,700만원	3,600만원
30~99인	x	1,800만원	2,700만원	3,600만원
100인 이상	x	x	2,700만원	3,600만원

2 지원한도

기업 당 최대 90명까지

05 지원절차



청년 신규채용 (사업주)



지원금 신청 (사업주) / 매월단위

*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



장려금 지급 (고용센터)

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

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지 제1호 서식]

「청년 추가고용 장려금」 지급 신청서

1. 사업장 현황			
사업장명		사업장관리번호	
소재지 주소		대표자	
담당자	성명		전화번호
2.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			
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(‘18년도 신규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기준)	장려금 지급구간별 기준 (매월 말일 기준)		장려금 지급 신청기간
	전체 피보험자수	지원대상 청년수	
년 월 (명)	년 월 (명)	년 월 (명)	---- (차수) (년 월 일 ~년 월 일)
3. 신청 내용			
청년 정규직 채용(전환) 현황 ()명			
성명 (주민등록번호)	채용(정규직전환)일 (년 월 일)	지급구간 해당월 지급 임금(원)	지급구간 해당월 임금지급 일수(일)
장려금 신청인원 ()명, 신청금액 ()원			
계좌번호	은행 (예금주:)		
「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			
년 월 일 신청인(대표):			(인)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			
첨부서류	1. 월별임금대장 2. 임금지급증빙서류 3. 근로계약서 4. 통장사본 등 입증서류		